

2014년도 취약공정개선로봇보급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 중 중소기업 취약공정개선분야의 2014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지능형 로봇 보급 및 확산”(전담기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사업의 일환인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014년 06월 24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한국기계연구원장

1. 사업 목적

□ 중소기업의 취약공정을 대상으로 로봇기반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공정개선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산 제조로봇의 보급 및 확산을 촉진

- * 중소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산업중분류상의 제조업(C10~C33)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 취약공정 : 높은 수작업 비율, 열악한 환경, 낮은 생산성 등으로 공정혁신에 의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제조 공정

2. 지원 내용

□ 지원규모 및 기간

- 신규예산 : 9.6억원
- 지원규모 : 컨소시엄별 지원규모는 제안내용의 특성에 따라 달라함
 - * 컨소시엄별 지원금은 평가·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수요기업 수(컨소시엄)	지원규모	비고
2개 이상	3억원~4억원 내외	국비는 로봇시범시스템 구축·운영, 성능평가, 홍보 및 유지보수 등에 지원
1개	2억원 미만	

- 지원기간 : 8개월(2014년 8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 지원유형 : 국내 중소기업(수요기업) 적용에 한함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수 및 구성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을 달리함

참여기업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 중소기업 수가 2/3 이상	총사업비의 60% 이하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중소기업 수가 2/3 미만	총사업비의 50% 이하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 *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
-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 *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 사업비(정부출연금) 지원 내용

- 사업비는 로봇시범시스템의 구축에 필요한 비용으로 다음의 용도로 집행
 - 로봇시스템 도입 및 설치 비용(로봇, 제어기, 전장품, 센서시스템 등)
 - 작업기능 구축 비용(작업 툴, 센서시스템 구축, 운용프로그램 작성 비용 등)
 - 로봇시범시스템의 성능평가(신뢰성, 시험 평가 등) 비용
 - 초기 운용 및 사용자 교육 비용 등(과제 종료시 까지)
 - 사업비 신청시 다음의 비율을 참고
 - * 로봇시스템 구축 비용 : 총 현금사업비의 30% 이내
 - * 성능 및 신뢰성 : 총 현금사업비의 10% 이내
 - * 마케팅 및 홍보 : 총 현금사업비의 10% 이내
- 다음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로봇시범시스템 구축 공간, 공작기계 등 공정 구성 및 개선에 필요한 기계장치류 (수요기업 자체 제공)
 - 로봇 시제품 개발, 제작 및 성능평가 비용(개발 완료된 로봇 적용을 전제로 함)
 - 해외 홍보 및 전시회 출품 비용(구축된 시범시스템의 동종 및 유사 업종의 확산을 위한 국내 홍보 및 전시 비용만 인정)

□ 본 사업은 기술료 비정수 사업임

3. 지원 분야

□ 세부 지원 분야

○ 중소기업 분야의 공정개선을 위한 로봇기반 자동화 시스템 구축

* 중소기업 분야 : 중소기업체가 영위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산업중분류상의 제조업(C10~C33) 분야

<p>*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산업중분류상의 제조업(C10~C33) : 식료품(10), 음료(11), 섬유제품(의복제외)(13),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14), 가죽, 가방 및 신발(15), 목재 및 나무제품(가구제외)(16),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17),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8),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1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2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22), 비금속 광물제품(23), 1차 금속(24),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25),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 장비(26),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27), 전기장비(28), 기타 기계 및 장비(29), 자동차 및 트레일러(30), 기타 운송장비(31), 가구(32), 기타 제품(33)</p>

○ 추진단의 자체 조사 및 전문가 위원회 검토에 따라 다음 6개 분야의 경우 우대함

산업분야	대상로봇
섬유, 의복, 신발 산업분야	·재단, 소재 cutting, 봉제작업 등이 가능한 로봇 ·운동화 표면가공 작업 로봇
전기장비 및 전자부품 산업분야	·조립 정밀도와 속도를 갖는 다양한 부품을 다루고 결합하는 조립로봇 ·관련 중량물의 능숙한 취급이 가능한 물류용 로봇
식료품 및 음료 산업분야	·소형 식품의 고속 포장, 분류, 라벨링 작업 로봇 ·중량 재료의 절단, 중량물 적재, 팔레타이징 로봇
목재, 나무제품, 가구 및 종이, 인쇄 등 기록매체 분야	·(목재, 나무제품, 가구분야) 머시닝 작업, 중량 목재 핸들링 ·(종이, 인쇄, 기록매체 분야) 운반, 포장, 적재(팔레타이징), 디팔레타이징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분야	·사출 취출 로봇: 사출성형기 금형내에서 가공된 플라스틱 제품 취출 ·플라스틱 레이저 가공 로봇: 각종 플라스틱 제품의 절단에 적용
이적재/핸들링 로봇 적용분야	·이적재 및 핸들링용 로봇으로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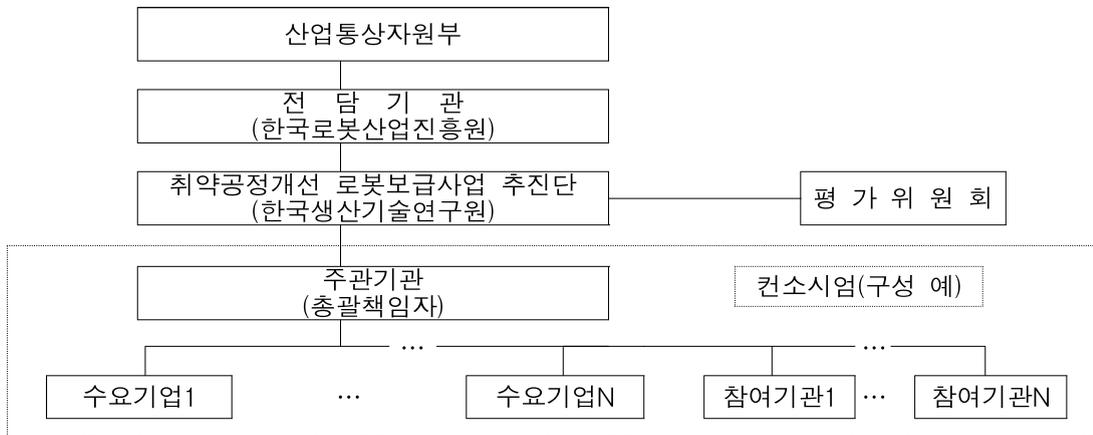
○ 기 구축된 로봇시범시스템과 유사한 로봇시스템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www.smirobot.re.kr → 사업현황(2011~2013년)에서 기 지원사업 확인

4. 주관기관, 참여기관과 수요기업의 신청자격 및 과제신청 유의사항

□ 컨소시엄의 구성

- 추진체계(컨소시엄 구성)



□ 신청 자격

- 주관기관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로봇기업(로봇 생산기업 또는 로봇시스템 통합 사업자)이 담당
 -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중소·중견기업(법인사업자에 한함)
- 참여기관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으로서 주관기관의 판단에 따라 선정(참여기관 없이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지역거점로봇센터, 공공기관, 출연연, 산단공 등의 컨소시엄 참여는 가능하나 참여 예산은 최소한의 경비 이내로 제한
- 수요기업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역할을 담당
 - 로봇시범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공정 및 부지 제공, 공작기계 등 공정 구성 및 개선에 필요한 기계장치류 제공, 자체 인력에 의한 시스템 운영 및 관리
 - 로봇시범시스템의 효과적 활용 사례 도출 및 대외 홍보
 - 협약 시 위 내용을 포함하며, 주관기관과의 MOU 체결 필수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www.ntis.go.kr) 제재정보검색에서 확인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년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이행보증보험을 징구할 수 없는 기업

신청시 유의사항

- 수 공정 작업에 비하여 확연한 생산성 및 품질 향상 근거자료 제시
- 시스템의 사업화 모델 및 공급 전략 수립(보급 및 확산 전략을 구체적으로 명시)

5. 신청 요령

신청방법

- 공고 기간 : 2014. 06. 24(화) ~ 2014. 07. 23(수) 까지 30일
-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아래 접수처로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신청서 접수 기간 : 2014. 07. 10(목) ~ 2014. 07. 23(수) 18:00 까지
 - *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신청서 접수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아래 관련 사이트 참조
 - 한국로봇산업진흥원(www.kiria.org), 한국로봇산업협회(www.korearobot.or.kr), 한국생산기술연구원(www.kitech.re.kr), 한국기계연구원(www.kimm.re.kr) 홈페이지
- 접수처 : (426-91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향가울로 14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중소제조 취약공정개선 로봇보급사업추진단(연구1동 A320호)
정여진 연구원(031-8040-6373, slow97@kitech.re.kr)

제출된 서류는 일절(一切) 반환되지 않음

구비 서류

-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및 사업계획서 파일
- 실증 모델로 사용할 로봇 및 로봇시스템 사진 또는 동영상 파일
-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비영리기관 제외)
- 최근 3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영리법인 또는 기업에 한함)
- 주관기관, 참여기관(수요기업 포함)의 참여확약서(별지서식 2호)
- 주관기관과 수요기업간의 MOU 체결(선정 후 협약 시)
-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6. 관련 규정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로봇산업진흥원 로봇보급사업 관리지침

7.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평가절차 및 지표

- 사업계획서 접수('14. 7월) → 사전검토('14. 7월) → 서면평가('14. 7월~8월) → 평가위원회 평가('14. 7월~8월) → 평가결과 통보('14. 8월) → 신규사업자 협약('14. 8월)

※ 일정은 신청 규모,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

○ 평가항목

구분	항목	세부 항목
기획 능력 (30점)	사업 목표의 명확성	·사업 목표와 내용의 명확성(구체적, 정량적 제시) ·제안 로봇시범시스템의 명확성
	컨소시엄 구성의 타당성	·사업 목표와 수요기업의 적합성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취약공정개선 로봇보급사업의 목적과 제안과제의 부합여부
수행 능력 (35점)	사업수행 능력	·제안 로봇시범시스템의 성능(성능, 안전성 등) ·수요처 확보(계약, MOU 등), 마케팅 능력 등
	사업투자 능력	·참여기관의 추가 투자 등
	사업비의 적합성	·사업비 편성 및 집행 계획 타당성
기대 성과 (35점)	경제적 파급효과	·사업성과를 활용한 시장진입 및 시장창출 가능성 (수출, 수입대체, 시장창출 등)
	비즈니스 모델의 타당성	·비즈니스 모델의 실현 가능성 및 시장 파급력
	사업 지속성	·과제 종료 후 해당 사업의 지속성 (홍보전략, 시스템 공급 및 시장 확산전략 등)

* 위 내용은 평가 시 일부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음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정지원이 있는 경우
- 기업의 민간부담금 중 수요기업의 현금부담률이 높은 과제
- 수요처의 구매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기술개발과제 성격의 사업인 경우
-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기지원된 중소기업용로봇보급사업(‘11~’13년)의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지원 대상 선정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최종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 중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
 - * 최종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 및 사업범위, 수요기업 수는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8. 신규사업 참여를 위한 설명회 및 문의처

□ 사업설명회

- 목적 : 2014년도 지원분야, 지원 방법 및 사업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
- 개최일자/장소

지 역		장 소	일 시
수도권	부천시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회의실	7월 2일 (14:00)
동남권	대구광역시	대구기계부품연구원 메카트로닉스부품산업화센터 글로벌홀	7월 3일 (14:00)

* 개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설명회에 참석할 경우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로봇산업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 후 참석 요망

□ 문의처

- 공고 내용 및 관련양식은 아래 관련기관 홈페이지 참조
 - 한국로봇산업진흥원(www.kiria.org), 한국로봇산업협회(www.korearobot.or.kr),
 - 한국생산기술연구원(www.kitech.re.kr), 한국기계연구원(www.kimm.re.kr)
- 기 지원사업('11~'13년) 내용 확인은 아래 홈페이지 참조
 - ※ www.smirobot.re.kr → 사업현황(2011~2013년)
- 문의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한국기계연구원 중소기업 취약공정개선 로봇보급사업추진단
 남경태 수석연구원(031-8040-6362, robotnam@kitech.re.kr),
 서훈식 과장(042-868-7230, hssuh@kimm.re.kr)